

지질환경과학과 전과(전출사항) 지침[개정]

□ 전출 허가인원 산출기준

- 2학년 전출인원은 학기별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% 이내 전출허가
 - 3학년 전출인원은 이전학기 2학년으로 전출허가 된 학생들이 3학년으로 진급하는 잔여인원 만큼 전출
 - 4학년 전출인원은 전전학기 2학년 전출허가인원 + 직전학기 3학년 전과 허가인원 + 직전학기 4학년 전과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 만큼 전출
- (학칙 제63조, 학사운용규정 제12조제3항 근거)

□ 전출 선발 기준

- 전과신청 지원 자격을 득한 자는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의 5% 이내 전출 허가
- 전출허가 선발기준 :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전출 허가([별표1] 참조)

□ 경과조치

□ 시행시기

2018학년도 2학기 전과시행부터 적용

「별표 1」

평 가 기 준

- 1) 전공필수 및 선택이수학점(20점)
- 2) 전공필수 및 선택이수평점(20점)
- 3) 전과지원 학과전공 관련 이수학점(10점)
- 4) 전체 이수평점(10점)
- 5) 학과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도(10점)
- 6) 지도교수 상담유무 및 횟수(10점)
- 7) 전체야외답사 참석 유무 (신청 학년도에 참석- 10점/ 불참 - 0점)
- 8) 전과지원 타당성(10점)

제출서류 혹은 면접을 통하여 전과 희망학과 선택의 타당성과 이유 등을 검토하여 평가함.

- 9) 평가위원은 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평가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순위를 결정한다.